



문화체육관광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 알림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·공포(법률 제16622호, 2019.11.26.)되어, 2020. 5. 26.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, 귀 기관(단체)에서는 직원교육, 소속단체 전파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법 시행 후 관련 사항으로 행정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 내용

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

*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

- 가.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- 나.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

□ 개정 조문

- 제34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1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
- 제67조(과태료)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부과·징수한다.

□ 행정 사항

-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부, 지회에 동 사항 전파
- 프로스포츠협회는 각 연맹에 동 사항 전파

- 붙임 1. 관보 게시문 1부.
2. 개정 법률안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체육회장, 대한장애인체육회장,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,
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장

주무관 김혜진 행정사무관 이정희 체육정책과장 전결 2019.12.20.
강수상

협조자

시행 체육정책과-5598 (2019. 12. 20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(어진동 184) 정부세종청사 15동 / <http://www.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3123 팩스번호 044-203-3489- / calli625@korea.kr / 대국민 공개